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3-31
------------	-------

제출년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폐지사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구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장학기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존속시켜 운영 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폐지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3.3.21 ~ 2012.4.10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3.4.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의 설립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되는 기금의 잔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다.